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1년 12월 29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황**	황** 1966-03-04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66-12-26	경기도 구리시 안골로86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59-08-08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	무단전출
한**	한** 1961-10-20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3-07-25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42번길	무단전출
송**	송** 1974-03-07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42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64-04-09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	무단전출
유**	유** 1986-09-26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29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82-03-29	경기도 구리시 검배로72번길	무단전출
원**	원** 1973-01-01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64번길	무단전출
허**	허** 1951-12-01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59-04-07	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58-05-09	경기도 구리시 검배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75-07-04	경기도 구리시 검배로	무단전출
채**	채** 1958-10-25	경기도 구리시 검배로94번길	무단전출
유**	유** 1956-07-08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55번길	무단전출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**2011년 12월 29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신**	신** 1985-12-13	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39번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유 은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의전화 : 031-550-2607 )

2011년 12월 22일

수택2동장 인